축산악취 컨설팅 기반 농가별 맞춤형 지원사업

< 사업목적 >

- 축산농가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기 추진한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축사 형태와 사육환경에 따른 맞춤형 시설 개선이 필요
- 시설 밀폐·개보수, 악취저감시설 설치,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등을 통해 실질적인 악취 저감과 축산환경 개선

□ 관련근거

○ 축산법 제3조, 경기도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

□ 사업개요

○ 사업기간 : 2026년 1월 ~ 12월
○ 사 업 량 : 35개소
○ 사 업 비 : 8,500백만원(도비 1,275, 시군비 2,975, 자부담 4,250)
○ 지원한도 : 250백만원/개소당 ※ 한도액 초과 시 자부담으로 추진 가능
○ 보조비율 : 도비 15% 시군비 35%, 자부담 50% ※ 자부담 시군비로 대체 가능
○ 사업내용 : 악취저감 컨설팅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개선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 악취저감 효과가 기대되는 맞춤형 시설을 지원

□ 지원자격

○ 지원대상:
- (1순위) '22~'25년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농가 및 축분비료공장
- (2순위) 축산환경 컨설턴트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게 컨설팅 받은 농가 및 축분비료공장

○ 대상선정: 시·군에서 사업 선정 기준표에 따라 대상 농가를 평가하며,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지원 대상 농가 선정

○ 지원제외
- 무허가 축사 등 불법 건축물 보유 농장(일부 무허가도 포함)
-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선정되어 받을 예정인 농가

□ 지원자금의 용도

○ 축사·퇴비사 등 신·개축·밀폐

- **(개방형 축사 밀폐)** 투명 방풍막, 단열 패널, 자동 개폐식 커튼 등
- **(퇴비사 구조 개선)** 벽체·지붕 밀폐, 악취 포집용 상부 후드 설치, 자동 개폐식 도어 설치 등
- **(개방부 폐쇄 및 차폐벽 설치)** 콘크리트·패널형 차폐벽 등
- **(분뇨저장조 밀폐)** 고정식 지붕, 부유식 커버, 슬러리 피트 밀폐형 등

○ 악취 측정 및 저감 시설 설치

- **(탈취 및 여과 시스템)** 세정탑, 바이오필터, 플라즈마 악취 분해기 등
- **(환기·정화 설비)** 공기 정화시설, 내부 환기시설 개선 등
- **(포집·이송·처리 설비)** 저장조 밀폐 커버 및 포집팬, 악취 포집용 집진덕트, 배출가스 저감 시스템 등
- **(악취측정장비)** ICT 악취측정 기계·장비(설치 필수)
- **(분사·살수 시설)** ICT 악취측정 장비 연동형 자동 안개분무 시설(설치 필수), 바이오 커튼, 자동분사 타이머 등

○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·개보수

- **(액비처리 및 저장시설)** 액비순환시스템, 액비 저장조 표면 폭기장치, 수중 폭기기, 고속 데칸타, 액비 고속변화 시스템 등
- **(퇴비화·발효시설)** 고속 발효(건조)기, 자동퇴비화 설비, 밀폐형 발효 시설 등
- **(소화조·저장조 등 개보수)** 혐기·호기 소화조 개보수, 발효조·저장조 밀폐 등

○ 기타 맞춤형 지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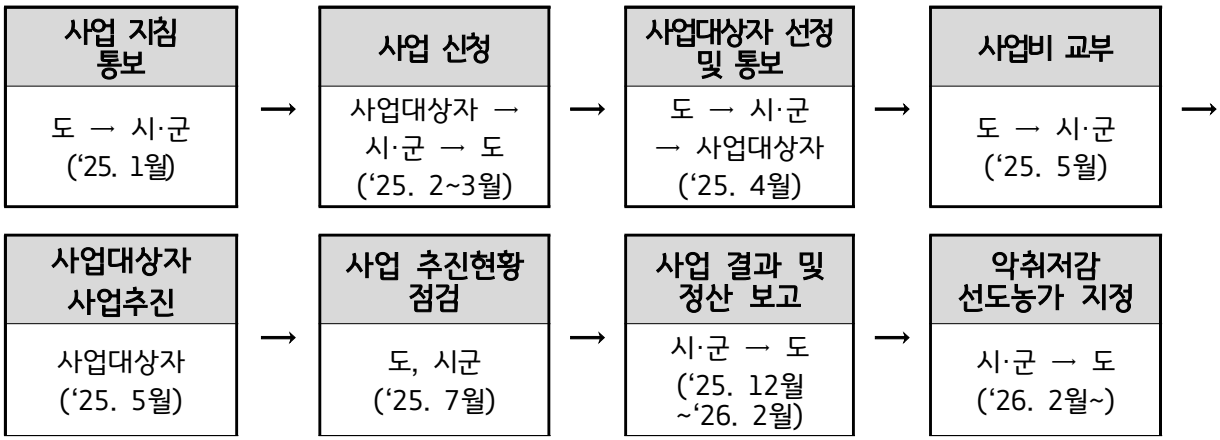
- 그 외 컨설팅 결과에 따라 악취저감 효과가 명확히 인정되는 시설

< 지원범위 및 유의사항 >

· 축사·퇴비사 등 신·개축·밀폐, 악취저감 시설 설치,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·개보수는 컨설팅 결과를 참고하여 농가 희망 품목으로 지원 가능

· 각 사업대상자는 단일 시설 외에 복수 시설을 조합(패키지 지원)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시설 간 기능과 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고 중복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함

□ 사업추진 절차



□ 기대효과

○ 축산농가 악취저감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시설 지원으로 농가별 악취 발생 원인을 효과적으로 개선

○ 자율적 환경관리 역량 강화 및 악취저감 우수농가 선도농가 지정과 성과 공유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 환경 대응 능력 향상

□ 행정사항

○ 사업 대상 농가는 악취측정 ICT 장비 및 ICT 연동형 자동 안개분무기 필수 설치(양돈농가만 해당, 기 설치 농가 제외)

○ ICT 악취측정 장비는 축산환경관리원의 '24년 악취측정 ICT 기계·장비 평가 및 '25년 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관련기술 평가 선정 장비 가급적 사용 권장

○ ICT 악취측정 장비 계약 시 소모품 교체, 소프트웨어(업데이트 등) 점검, 고장 수리 등 5년간 무상 유지보수 조건을 계약서에 명시

※ 설치 위치(필수) : 농장 경계선 1개, 축사 배기팬 5m 이내 1개(설치 우선순위 : 비육사 → 육성사 → 모돈사 → 자돈사)

○ 행정절차, 자부담 확보 능력, 사업 추진 기간 등을 감안 당해 연도 예산 집행 및 시설 개선 완료가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

○ 사업 추진 완료 농가 중 악취저감 효과가 우수한 농가는 시·군에서 도에 선도농가로 추천하고, 도는 이를 활용하여 축산환경 개선 교육 등 관련 사업에 활용

□ 표준프로세스(SP)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

1. 사업 선정단계

가. 사업대상자

○ 사업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작성(시설 설치·개선 항목, 공사 계획, 예산 사용계획 등 포함) ※ <첨부 1, 2> 서식 활용

○ 자부담 조달계획 수립(별도 자부담 계좌 개설 등)

○ 작성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 시·군에 제출

나. 시·군

○ 농가 제출서류 접수 및 검토(컨설팅 결과 반영 여부, 사업계획의 적정성, 예산 구성 타당성 확인 등)

○ 시·군은 사업 선정기준표 등을 활용하여 자체 심의를 거친 후 지원 우선순위 결정 ※ <첨부 7> 서식 활용

○ 시·군은 지원 우선순위를 확정한 후 해당 농가를 도에 추천

다. 도

○ 시·군에서 추천한 사업대상자 자료 검토(우선순위, 예산 적정성, 사업목적 부합성, 중복 지원 여부 확인 등)

○ 최종 사업대상자 확정 및 시·군에 통보

2. 사업 시행단계

가. 사업대상자

○ 시·군의 사업 확정 통보 수령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

- 지자체의 교부 결정 없이 사업을 착수할 경우,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위반으로 사업 취소 사유

○ 교부 결정 통보 후 지체 없이 사업을 착수

○ 자부담 포함 별도 계좌 개설 후 자부담 입금 증빙 제출

○ 자부담은 보조금보다 우선 집행되어야 하며, 자부담 예산도 보조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철저히 관리·집행

나. 시·군

○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후, 관련 법령 및 예산 목적의 적합성, 자부담 입금 여부 등을 검토

- 신청자가 별도 보조금 전용 통장을 개설했는지 확인하고, 자부담이 실제 입금되었는지 통장 내역 등 확인

○ 사업대상자에게 자부담 우선 집행 원칙 및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, 송금 내역 등으로 선 집행 여부 증빙토록 지도

○ 사업대상자가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, 변경사유서를 시·군에 제출하며, 시·군은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도에 사업계획 변경 요청

○ 이외 자금 교부, 집행,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,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 등 관련 법령을 준수

3. 자금배정·교부단계

가. 시·군

○ 보조금 교부 전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계약서, 세금계산서, 통장 거래 내역 등 주요 증빙자료를 확보하고 사후관리 기간까지 보관

○ 계좌 거래 내역,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사업비가 직접 집행되었는지 수시로 점검

○ 보조금은 자부담 선 집행을 확인한 후, 사업 진척 상황을 고려하여 2회 이상 나누어 교부하는 방식으로 집행

○ 개인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영수증으로 인정되지 않으며,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음

4. 이행점검단계

가. 시·군

○ 사업추진 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, 지도 및 감독 수행

○ 사업 중간 추진실적은 분기별로 점검하여 익월 10일까지 도에 보고 ※ <첨부4> 서식 활용

○ 사업 진행 상황과 자부담 집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, 문제 발생 시 시정 조치를 요구

-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

○ 보조금 집행내역은 수시로 점검하여 증빙서류와 일치하는지 확인

○ 사업 목표 달성 및 성과 측정을 위한 자체 평가 계획 수립 ※ <첨부5> 서식 활용

○ 보조사업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경우,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

5. 정산단계

가. 사업대상자

○ 사업 완료 시 실적·정산보고서, 지출증빙서류 등을 시·군에 제출 ※ <첨부6> 서식 활용

○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, 사업 완료 후 신속한 서류 제출 및 협조 이행

나. 시·군

○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 완료 시 실적·정산보고서, 지출증빙서류를 바탕으로 사업 검정 및 사업비 정산 추진 ※ <첨부6> 서식 활용

○ 정산 과정에서는 현지조사와 함께집행 내역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며, 부당집행이 발견되면 환수 조치

○ 실적·정산보고서를 검토하여 도에 보고하고, 부적합할 경우 시정 또는 환수 등 필요한 조치 이행

❍ 정산액이 계획 대비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 조치

❍ 보조금 정산 잔액이 발생한 경우, 해당 금액 및 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관련 법령을 준수

6. 사후관리단계

가. 사업대상자

❍ 완료된 시설은 경기도 보조 사업임을 표시하는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, 사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함

❍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은 사후관리 기간 내 경기도 승인 없이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, 대여, 담보 제공 등을 할 수 없음

❍ 부동산 및 종물의 경우,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라 등기부에 부기등기를 해야 함

❍ 지원시설 장비 및 농장 악취관리 철저

나. 시·군

❍ 매년 최소 1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며, 전담 책임자를 지정하여 실태조사 및 점검을 체계적 수행

※ ICT 악취측정 장비는 농가별 측정치를 참고하여 수시점검

❍ 점검 결과 위반사항(자금 유용, 목적 외 사용 등)이 발견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자금 회수 등 조치

❍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기준

재 산 명	사후관리기간		처분제한 기준
	부터	까지	
건물 및 부속설비	준공일	10년간	매각, 양도, 교환, 대여, 담보제공 등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
주요 기계·장비	구입일	5년간	

❍ 사후관리 기간 중 시설 양도 시에는 경기도 승인을 거쳐야 하며, 승인 없는 이전 시 자금 회수가 원칙

7. 성과단계

가. 시·군

❍ 사업 완료 후, 사업 목표 및 성과 달성 여부를 익년 2월 말까지 도에 보고 ※ <첨부6> 서식 활용

나. 도

❍ 시·군에서 제출한 성과보고서를 종합 정리하여 사업의 전체적인 악취 저감 효과 등을 분석하고 정책자료로 활용

8. 제재 및 처벌

가. 시·군

❍ 사업 실적 부진, 부실 집행, 무단 용도 변경 등 문제가 확인될 경우, 보조금 회수 및 차기 사업 예산 지원 축소 등의 조치 시행

❍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 환수 조치를 하며, 향후 3년간 경기도 축산 관련 사업 참여 제한

※ 단, 고의가 아닌 단순 실수(착오) 등에 의한 법 위반의 경우는 제외함

❍ 보조금 부정 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수사 의뢰 및 고발 조치

❍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농도의 허용한계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행정조치 실시

[첨부 1] 사업신청서

<table>
<tr><td colspan="8">「축산악취 컨설팅 기반 농가별 맞춤형」 지원사업 신청서</td></tr>
<tr><td rowspan="6">사업자
현황</td><td colspan="2">대표자명
(법인)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연락처</td><td colspan="2">전 화) :
핸드폰) :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주소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축산시설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연락처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시설주소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인력현황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축산업등록증 고유번호, 법인 등록번호</td><td colspan="5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사육현황</td><td colspan="2">축종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사육형태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사육
두수</td><td>비육</td><td>번식</td><td>모돈</td><td>자돈</td><td>육성</td><td>산란</td></tr>
<tr><td>두</td><td>두</td><td>두</td><td>두</td><td>두</td><td>수</td></tr>
<tr><td rowspan="4">축사현황</td><td>산란사 등</td><td colspan="2">육계사 등</td><td colspan="2">모돈사 등</td><td colspan="2">비육사 등</td></tr>
<tr><td>면적</td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동수</td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>두수</td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사업비</td><td rowspan="2">사업비
(천원)</td><td>계</td><td>도비</td><td>시·군비</td><td colspan="3">자부담</td></tr>
<tr><td></td><td></td><td>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지원시설
세부내역
및
사업비</td><td colspan="2">지원시설</td><td>사업비</td><td colspan="2">지원시설</td><td colspan="2">사업비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</td><td></td><td colspan="2"></td><td colspan="2"></td></tr>
<tr><td colspan="8">「축산악취 컨설팅 기반 농가별 맞춤형 지원사업 시행지침」에 의거 상기와 같이 지원사업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자 (서명 또는 인)

○○○ 시장·군수 귀하</td></tr>
<tr><td colspan="8">첨부서류 : 사업계획서, 축산업등록증 또는 법인등록증 사본, 등기부등본, 건축물대장 등</td></tr>
</table>

[첨부 2] 사업계획서

축산악취 컨설팅 기반 농가별 맞춤형 지원사업 계획서

1. 사업개요

○ 사 업 명 :

○ 사업기간 :

○ 사업지역 :

○ 사 업 량 :

○ 사업대상자

- 농장(법인)명 : (대표 :)

2. 세부사업 내용 및 규모

구분	세부 시설명	사업량	사업비(천원)			
			계	도비	시·군비	자담
축사·퇴비사 등 신·개축·밀폐						
악취저감 시설						
가축분뇨처리 시설·개보수						
기타 맞춤형 지원						

3. 세부사업별 추진일정

구분	1분기	2분기	3분기	4분기
축사퇴비사 등 신·개축·멸폐				
악취저감 시설				
가축분뇨처리 시설·개보수				
기타 맞춤형 지원				

4. 사업완료 후 운영계획 및 사후관리

○

-

○

-

5. 동일 또는 유사사업 지원 내역

사업명	지원 년도	지원시설	사업비			
			계	도비	시군비	자담

[첨부 3]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

사업대상자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

『개인정보보호법』제 15 조 및 제 22 조에 따라 당 기관은 사업신청자의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귀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
1. 수집 개인정보 항목

- ○ 수집항목 : 대표자명(법인) · 농장명 · 연락처(자택, 휴대전화) · 주소(집주소, 농장주소) · 축산업허가(등록)증 고유번호(농장식별번호), 법인 등록번호 등
- ○ 개인정보 수집방법 : 사업신청·계획서 등

2. 수집 및 이용 목적

- ○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, 사업계획 검토, 사업실적 관리 등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개인정보 이용
- ○ 사업 관련 정보의 제공, 사업 진행상황의 확인 및 사후관리 수행을 위한 이용

3. 보유 및 이용기간

- ○ 본 사업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이용하며, 사업 종료 후 주요·기계장비는 5년, 건물 및 부속설비는 10년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유·활용

4. 제공 받는자

- ○ 사업총괄기관 : 경기도(축산정책과)
- ○ 사업시행기관 : 관할 시·군·구
- ○ 사업실무 및 사후관리기관 : 관할 시·군·구

5.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

- ○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,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 또는 대상자 선정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6. 개인정보 제공 및 공유

- ○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본 동의서에서 고지한 수집·이용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하며, 명시된 제공받는 자 외의 제3자에게는 법령에 근거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하지 않습니다.

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 및 조회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, 이에 동의합니다.

20 년 월 일

사업장 명칭 _____ 성명 _____ (서명 또는 인)

○○○ 시장 · 군수 귀하

[첨부 4] 사업 중간 추진실적

사업 중간 추진실적 보고

시군	사업 대상자	사업진도		()월 기준 사업비 집행내역							
		추진내역	공정 (%)	계획				집행			
				계	도비	시군비	자부담	계	도비	시군비	자부담
합 계											

※ 주요 추진내역 : 착공, 발주, 시설 설치 등 진행사항 내용 및 추진날짜를 표시

1. 향후 사업추진 일정

○

○

2.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

○

○

[첨부 5] 사업 자체 평가계획서

자체 평가계획서

1. 사업개요

○ 사 업 명 :

○ 사 업 비 :

○ 사업내용 :

2. 사업목표 달성(악취저감, 예산집행 등)

○ 악취저감 목표 달성도 : 암모니아·황화수소·복합악취 수치 전·후 비교 수치

○ 예산 집행률 : 전체 예산 대비 집행액 비율

○ 사업추진 일정 준수 여부 : 계획 대비 완료 시점 비교

3. 사업추진 성과 측정

○ 정성평가 : 축산농가 만족도, 민원 감소 등 간접 효과

○ 정성평가 : 악취 측정 수치 변화, 처리시설 가동률, 점검 횟수 등

○ 지속가능성 평가 : 사후관리 계획 수립 여부 및 실현 가능성

4. 시·군 자체 평가계획

○ 자체 평가 방식 : 담당 부서 내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또는 현장 점검 기반 평가 시행

○ 평가 일정 :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평가 완료 및 결과 보고

※ 해당 서식 변경 가능

[첨부 6]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서

※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【별지 제2호서식】

실 적 보 고 서

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.

첨부 서류 1.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

2.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

년 월 일

제출자 **기관·단체명** **대표자** (서명 또는 인)

지방보조사업자(개인) **성 명** (서명 또는 인)

경기도지사 귀하

1. 사업개요

<table>
<tr><td>지방보조사업자</td><td colspan="3">성명(개인) 또는 기관·단체명 (기관 · 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합니다.)</td></tr>
<tr><td>사 업 명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사업기간</td><td colspan="3">. . . ~ . . .</td></tr>
<tr><td>교부 결정일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사 업 비</td><td rowspan="2">총 천원</td><td>보 조 금</td><td>천원 (%)</td></tr>
<tr><td>자 부 담</td><td>천원 (%)</td></tr>
<tr><td>사업목적</td><td colspan="3">○ (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.)
-
-</td></tr>
<tr><td>사 업
추진방법</td><td colspan="3">○ (사업목적)

○ (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)</td></tr>
<tr><td>목표달성</td><td colspan="3">○ (목표달성을 요약하여 작성합니다.)</td></tr>
<tr><td>사업성과</td><td colspan="3">○ (암모니아·황화수소 등 악취 물질 수치 저감 성과 등 작성합니다.)

※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합니다.</td></tr>
</table>

2.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

※ 작성분량: 2쪽 이내로 작성

시기	사업계획	시기	추진 실적	사유
월 일		월 일		

※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각 내용을 가급적 계량화·도식화하여 작성합니다. 이 경우 사업계획과 추진 실적 간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를 '사유'란에 작성합니다.

3. 사업추진 성과

○

-

※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, 사업의 홍보 실적, 투입 대비 산출 비교분석,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.

4. 자체평가

○

-

※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, 부족한 점, 문제점,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합니다.

5.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·건의사항

○

-

※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합니다.

6.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(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)

가.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

사업명	보조 사업자	취득 재산명	규격 및 모델명	취득 연도	단가 (원)	수량	취득 가액 (원)	설치 (시설) 주소	변동 내역
									신규 취득
									수량 변경

※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

나.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

사업명	보조 사업자	부기등기 대상 부동산	물건의 명칭	면적 (m^2)	사후관리 기간	취득/말소 일	말소 사유	변동 내역
								관리기간 변경
								부기등기 말소

※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

※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【별지 제3호서식】

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

1. 정산총괄표

(단위: 원)

구 분	예 산 액 (교부조건)	%	집 행 액	%	집행잔액	이 자 발생액	비 고 (잔액사유)
계		100					
보조금						총 이자발생액: 지방보조금 이자 발생액:	
자부담							

2. 내역별·일자별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

(단위: 원)

구분	비 목	지출일	지출금액	지 출 내 역	지출 번호	지급 방법
총 계						
보조금	소계					직불카드
						계좌입금
자부담	소계					

※ 지출일란에는 보조금 전용카드 결재일 또는 계좌입금 시 통장인출일을 작성합니다.
※ 집행내역에는 지방보조금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첨부합니다.

3.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

(단위: 원)

구 분	사 업 명	예산비목	교부액	지출액	집행잔액	집행잔액 발생 사유
보조금						
자부담						

※ 발생 사유란에는 사업계획의 변경, 사업의 취소, 보조금 지급 사유 미발생, 이자 등 집행잔액의 발생 사유를 작성합니다.
※ 1. 정산총괄표의 작성 사항과 중복되는 내용도 있으나 총괄표에 작성한 내용을 예산 비목에 따라 구분하여 작성 (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질의답변,'22.3월)

4.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

(단위: 원)

단위사업	당초 계획액(A)	실제 사용액(B)	증감(B-A)	집행률 (B/A*100)
계				

※ 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내역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“계좌이체, 카드,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등을 통해 사용한 지방보조금의 집행”을 근거로 작성(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질의답변,‘22.3월)

5. 비목별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

(단위: 원)

세부 내용	예산비목	당초 예산	변경 예산	주요 변경 사유	비고

※ 변경예산이 발생한 경우에는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제14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변경 승인에 대한 공문 사본을 첨부합니다.

※ 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내역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“계좌이체, 카드,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등을 통해 사용한 지방보조금의 변경”을 근거로 작성(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 질의답변,‘22.3월)

[첨부 7] 사업 선정기준표

사업 선정기준표

평 가 항 목		세부 항목	배점	평점	
항목별	평가요소	-	100		
행정·평가 지표 (40)	○ 시·군 자체평가 순위(20점)	1위	20		시·군 자체 심의 후 지원 우선순위 결정
		2위	15		
		3위	10		
		4위 이하	5		
	○ 사업계획서 충실도 및 타당성(20점)	1위	20		시·군 사업 담당자 주관평가
		2위	15		
		3위	10		
		4위 이하	5		
컨설팅 참여 및 개선 실적 (20)	○ '22~'25년 컨설팅 참여 여부(20점)	4년 참여	20		매년 1회를 기준으로 하며, 4년 동안 모두 참여시 4회로 간주
		3년 참여	15		
		2년 참여	10		
		1년 참여	5		
악취 민원 및 환경개선 필요성 (20)	○ 최근 3년 민원 건수(20점)	8건 이상	20		
		5~7건	15		
		2~4건	10		
		1건	5		
		0건	0		
지원사업 참여 여부 (20)	○ '25년 축산환경 개선 교육 이수 여부(10점)	이수	10		
	○ '25년 축산환경개선 사업 및 양돈농가깨끗한 축산농가 환경개선제 지원사업 참여 여부(10점)	사업 참여	10		